
**A·디지털 시대 신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2026. 6.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차 례

I . 추진 배경	1
II . 수립 근거 및 경과	2
III . 현황 및 진단	3
IV . 비전 및 추진 전략	7
V . 세부 추진과제	9
1.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9
2.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15
3. 신뢰받는 이용 · 보호 기반 조성	18
VI . 추진 일정[안]	23

I. 추진 배경

□ AI·디지털 시대 신산업 분야의 핵심 자원인 위치정보

- 측위 기술과 ICT 인프라의 발전으로 위치정보산업 및 서비스의 중심이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다양한 기기와 산업으로 확산

※ 이동전화 중심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이 차량·로봇·웨어러블 기기·위치추적 태그 등으로 확장

- 신산업 발전 및 글로벌 시장 선도,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구축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 위치정보는 국민 보호·안전 유지를 위한 디지털 공공인프라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재해·재난 및 범죄 대응 등 공공·안전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 수요가 지속 확대 중
- 위치정보 관련 제도·산업은 국민 생명·신체의 신속한 보호 및 재난·범죄 대응을 위한 핵심 공공안전 인프라로 지속적 개선·발전 필요

□ 위치정보 이용 증가에 따른 위치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

- 위치정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생명·인격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 민감정보
- 위치정보 이용 기기의 다양화 및 보편화로 위치정보 유출 및 악용 범죄*가 증가하면서 위치정보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 확산

* 사람 또는 물건의 위치를 확인·추적하는 스토킹·상해·살인, 절도 등 범죄

⇒ 위치정보산업 육성, 위치정보 이용보호 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이 발전·강화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마련

Ⅱ. 수립 근거 및 경과

□ 수립 근거 및 배경

- 방미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근거하여,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 제2장(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 ▲ 제3장(위치정보의 보호)
- ▲ 제4장(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 제5장(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 국정과제 7-③(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권의 제고) 및 108-③(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의 추진과제로서,
 - ‘긴급구조 위치정보 고도화’ 및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 정책 추진

□ 추진경과

-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도약전략 방안 연구(‘25.6~12월)
- 정책 수요 도출을 위한 대·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의견청취(‘25.7.2., 7.29.)
-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자 간담회 및 정책 수립방향 설명회(‘25.9.11, 12.17.)
-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 관련 관계부처 정책 수요 조사(‘26.1~2월)
- 관련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26.5.1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 제20차 회의 보고·발표(‘26.6.29.)

Ⅲ. 현황 및 진단

1 위치정보의 개념

- '위치정보'는 단말기와 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사람의 위치를 측정한 정보로 위치기반서비스에 활용
 - 측위 기술의 발전은 물건과 사람을 잇는 위치기반서비스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위치정보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기능

<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 예시 >



- 위치정보산업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있음

< 위치정보산업 구조 >



-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동통신 네트워크(기지국), 위성신호(GPS 등), Wi-Fi, BLE(저전력 블루투스) 등 측위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 기기의 위치정보를 생성·수집하며
 -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 생태계를 구성

① AI·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위치정보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위치정보산업은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스마트물류, 로봇 등 다양한 AI·디지털 산업 분야의 기반 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5년 기준 위치정보사업자 및 기반서비스사업자 수는 3,185개에 이르며, 매출 규모는 3.8조원, 종사자 수는 1만 6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국내 위치정보산업 현황 (2015~2025년)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현황,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 위치정보 수집·이용 관련 기술의 발전·확산, AI 융복합 확대, 규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시장 진입 비용이 감소하고, 웨어러블·모빌리티·로봇 등 위치정보 기반 융복합 산업의 성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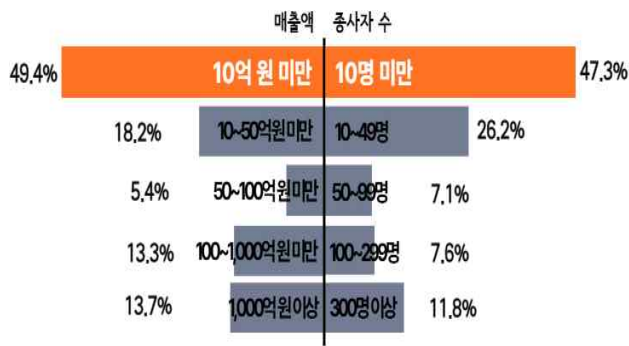
* 사물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신고' 제도로 완화, 이용약관의 '신고' 의무를 '공개' 의무로 완화('18),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허가'→'등록' 제도로 완화('21)

< 위치정보산업·서비스 환경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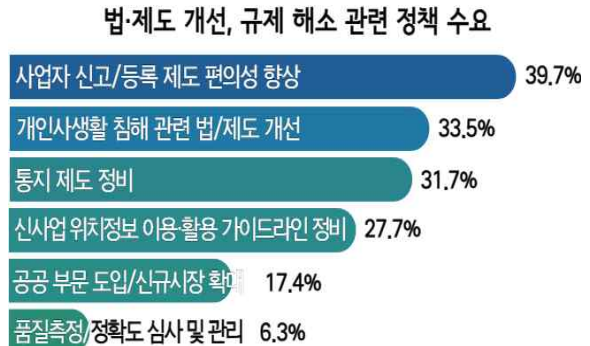


- 산업 내 다수 스타트업·중소사업자들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 부족한 자본, 정책 지원 부족 등으로 시장진입과 성장에 어려움 호소

< 국내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현황 및 애로사항 >



※ 2025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 복수응답, 2025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조사

⇒ 이동전화 생태계 중심의 위치정보 규제와 정책체계를 혁신기업 육성 등 AI·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 요구

② 국민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재해·재난, 범죄 등 긴급상황 시 구조기관이 구조대상의 위치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받는 것이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직접 요소
-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구조대상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발송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중심 역할 수행

<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이용 >



- 그러나 긴급구조기관(소방청·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경찰청)의 위치정보 이용 요건이 상이하고, 측위 기술(기지국, GPS, Wi-Fi)의 특성 및 기기 유형에 따라 위치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구조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

⇒ 위치정보는 국민 생명 보호, 재난·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안전 인프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필요

③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보편화와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우려 증가

- 위치정보는 오·남용되는 경우 즉시 또는 잠재적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정보로,
 - 「위치정보법」에서는 위치정보의 특별한 보호 등을 위해 사업 등록·신고 제도, 보호조치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 체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위치정보 처리 전 과정과 관련 사업자를 규율
- 그러나 기술·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위치정보 처리 기기의 다양화 및 보편화, 위치정보사업자 수 증가 등으로 위치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의 위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 日 토요타 215만명 위치정보 유출('23), 獨 폭스바겐 80만명 위치정보 유출('24) 등

** 美 자동차 회사 GM이 커넥티드 카 서비스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위치 정보 판매 전면 금지, 기존데이터 삭제 명령이 부과('25) / 통신사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T-Mobile이 이용자 위치정보의 접근권을 제3자에게 판매해 총 2억 달러 벌금이 부과('24)

-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스토킹, 상해·살인, 절도 등 위치정보의 범죄 악용 등 위치정보 관련 사회 문제가 심화

※ 불법 위치추적을 통한 스토킹 등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관련 경찰 검거건수는 최근 4년 간 41.9% 증가 ('22년 155건 → '23년 188건 → '24년 211건 → '25년 220건)

< 위치정보산업의 발전과 위치정보의 악용·오남용 관련 언론보도 >

"106조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 잡아라" ... 통신사 초정밀 측위 사업 본격화

2022.06.29 국토부경제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 확장 속 초정밀 측위 기술 확보 경쟁 치열
통신3사, 국내외 전문업체들과 제휴 관련 서비스 개발 속도



'상대방 몰래 위치 추적' 악성 앱 판매해 33억 번 일당

2026.01.28 뉴스1

통화 12만 건 녹음, 980명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
법원 "사회 미치는 악영향 고려, 엄중한 처벌 필요"



손안의 '디지털 방패', 위치 추적이 생명 구한다

2026.01.06 뉴스투데이

'감시'를 넘어 '생존'으로... 삼성·애플 등 제조사들 총출동 보안망 설계전원
버튼 5번 연속 누르는 '긴급 SOS' 기능, 112나 119에 자동 연결



"OO 찾아줘" ... 살인까지 부른 '흥신소 불법 위치추적'

2025.09.22 문화일보

위치추적을 통해 소재지 파악 등 피의자 복수 도와
흥신소 무분별 정보수집 논란... 불법 미행·추적 등 규제 목소리



cm 단위까지 찾아준다... 2세대 스마트 태그 각축전

2026.01.27. 한겨레

블루투스나 초광대역(UWB) 기술을 활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스마트태그는
5만원 이하 가격에 충전하면 1년 이상 사용 ... 시장 규모 1조1천억원 예상



'남양주 살인' 스토키 귀신 같이 여자를 찾아냈다... '위치추적 장치' 이렇게 쉽게 구하다니

2026.3.19. 해럴드경제

남양주 살인범이 쓴 '위치추적기'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별도 등록없이 익명 보장되는 상품도 "구매 시 철저한 관리 뒤따라야"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필요

IV. 비전 및 추진 전략

1

추진 방향

분 야	현 재 (AS-IS)	개 선 (TO-BE)
산업 정책	이동전화 단말기 중심 산업 정책 체계	▶ 융복합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스타트업 성장 기반 조성
공공 안전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사각지대 존재	▶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 안전 도모
이용자 보호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 증가	▶ 산업·서비스 환경 변화를 고려한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참고

위치정보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매사추세츠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의 판매·거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처리 중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위치정보 보호 법안이 발의('25.2.)되어 입법 논의중 ▶ 캘리포니아는 위치정보 보유기간 제한 및 위치정보의 제3자 판매·임대·거래를 금지하는 위치정보 보호 법안이 발의('25.2.), 주법무장관이 위치정보 업계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수집·판매 행위 대상 공개적 조사('25.3.) 실시 등 규제 압력이 강화
 EU	▶ 회원국에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정확도·신뢰도 기준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444」을 채택('22.12.), EU 회원국들은 국가별 자체 위치 정확도·신뢰도 기준을 마련하여 EU 집행위에 보고('24.3.)
 영국	▶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을 개정('26.2.)하여 긴급구조를 위해 지리적 위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가 없어도 단말기 정보 접근을 허용하여 GPS 등 이용자 단말기 기반 측위기술의 긴급구조 이용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화
 일본	▶ GPS 장치나 앱을 이용한 위치추적만을 규제하여 분실방지태그(위치추적태그, 이어폰 등)를 이용한 스토킹을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실방지태그를 이용해 타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행위를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12.)
 중국	▶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차 등을 통해 수집되는 위치정보로 인한 국가 안보 위험 대응과 개인 권익의 보호를 이유로 「자동차데이터 안전관리 규정」('21.10.)과 「자동차데이터 해외 이전 안전 지침」('26.2.)을 제정·발표하며 차량 데이터 대상 국외 반출 시 안전 평가, 처리활동 보고, 안전조치 등의 규제 부과
 사우디아라비아	▶ GPS 등 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등록 의무, 이용자 권리 보장 의무, 데이터 보존 및 보고 의무 등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Regulation for the Provision of Tracking Service」에서 규정('24.5.)

비전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혁신으로 시·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기본권은 두텁게 보호

정책
목표

- ▲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통해 신산업 창출 지원
- ▲ 위치정보 사각지대 보완으로 국민 생명·안전 도모
- ▲ 국민이 안심하는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1.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
2. 위치정보 정책 추진체계 구축
3. 위치정보 분야 창업·육성 촉진
4. 위치정보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②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1.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2. 긴급구조 위치정보 기술 고도화
3.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인프라 활성화

③ 신뢰받는 이용·
보호 기반 마련

1.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권리 강화
2. 사업자 관리·점검 체계 정비 및 혁신
3.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인식 제고

V. 세부 추진과제

전략 1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1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

① 오프라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 **(현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규, 변경)·인가(양수, 합병) 신청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오프라인으로 인쇄물 11부, USB 1부를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
- **(추진방향)** 사업자 부담 경감, 자원 절감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등 위해 등록·인가 신청서류를 전자문서로만 제출하도록 개선(고시 개정, ~26)

② 위치정보 보호조치 규제 정비

- **(현황)**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
- **(추진방향)** 산업환경 변화, 규제 실익 등을 고려하여 위치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기록 의무 보관기간 축소(5년→3년) 등 기준 정비(고시 개정, ~26)

③ 개인위치정보 동의 예외 범위 확대

- **(현황)**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①통계작성, ②학술연구, ③시장조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면 동의가 없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 다만, 예외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위험이 없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

< 관련 법령 : 위치정보법 제21조 >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현장의 목소리

- ▲ 개인이 식별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등 위험 요소가 적은 위치정보의 활용까지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AI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 **(추진방향)** 연구개발(학술연구, AI 데이터 학습 및 서비스 개발 등 포함)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게 가공(가명·익명처리)한 개인위치정보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 확대(법 개정, ~'27)
- ※ < 안전조치 신설 병행 > 개인이 식별되지 않게 가공한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하여 재식별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및 금지 의무 부과, 위반 시 제재·손해배상 규정 등 신설

현 행			개 선(안)		
			▶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		통계작성	연구개발
					시장조사

④ 위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개선

- **(현황)**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①매회 즉시 또는 ②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위로 모아서 이용자에게 제3자 제공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 관련 법령 : 위치정보법 제19조 >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③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 ▲ 위치정보 제공 사실 통보 메시지 자체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주어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스팸 메시지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아 서비스 개발이 어렵습니다.
- **(추진방향)** 이용자·사업자 편의성 등을 고려, '매회 즉시 또는 모아서 통보'하는 방식 외에도 단말장치 표시 방식*을 추가 허용(법 개정, ~'27)
- *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실시간 또는 연속적으로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단말장치 등에 표시하는 방법

현 행	개 선(안)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 사실을 ❶매회 즉시 또는 ❷동의받아 10배수 횟수 단위 또는 10·20·30일 단위로 모아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	실시간 또는 연속적으로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 제공 중이라는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단말장치 등에 표시하는 방법 추가 도입

⑤ 위치정보사업 신고 규제 합리화

- **(현황)** 변경신고, 폐업 승인 신청·신고 기준 등이 다소 복잡·불명확하여 법률 준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비의도적 법 위반 가능성 증가

규제 합리화 대상① : 변경신고 관련 법령

- ▶ 사업자가 '상호·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필요 (위치정보법 제5조, 제5조의2, 제9조)
- '상호나 소재지 변경이 있는 후' 변경신고를 하는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위치정보법 제43조제3항제1호)

규제 합리화 대상② : 폐업 관련 법령

- ▶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폐업 전' 폐업 승인 신청·신고가 필요하며, 폐업 전까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확인자료')를 기록·보존할 의무가 있고, 폐업과 동시에 확인자료는 파기해야 함(위치정보법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2항)
- ▶ 한편, 시행령에서 폐업 신청·신고 시 '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위치정보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
- 폐업 전(폐업 승인 신청·신고 시점)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임(위치정보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추진방향)** 상호·소재지 변경신고 의무 완화(사전→사후신고*) 및 폐업 신청·신고 서류 명확화(파기 증명서류→파기 계획서류**) 등 개선(법·시행령 개정, ~'27)

* 「상법」은 상호·소재지 변경 후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신고로 완화

**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이 규정한 폐업 승인 신청·신고 시 제출 서류를 '파기 계획서류'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해석상 혼란 방지

① 위치정보 정책 거버넌스 정립

- **(현황)** 위치정보 활용이 일반화되고 관련 산업·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수요에 대응할 정책 거버넌스는 부재
 - **(추진방향)** 다양한 산업 영역과 관계되는 위치정보 정책의 협력·조율을 위해 위치정보 정책 거버넌스인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시행령 개정, ~'27)
- ※ 현행법상 위치정보산업·서비스 진흥·규제 및 보호·활용은 방미통위, R&D·표준화는 과기정통부, 위치정보가 포함된 개별 산업 정책은 각 산업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 위치정보 산업·서비스 정책, 공공안전 기반 조성, 이용자 보호 등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정책을 수행할 전담부서 설치 추진('26~)

② 투자·창업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 **(현황)** 산업 구조의 변화로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 미비
 - **(추진방향)** ^{가칭} '위치정보 이용촉진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산업 육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행체계 마련(법 개정, ~'27)
-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방미통위 직무에 '위치정보산업 투자·창업 활성화 지원' 기능을 명시(시행령 개정, ~'27)

① 분야별 위치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 기술발전으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서비스는 다양·다변화되고 있으나, 신기술·융합 영역에 관한 위치정보법 준수 가이드라인 부재

현장의 목소리

- ▲ 규제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해석 사례 제공, 원활한 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추진방향)** 신규·융합 서비스 창업 관련 법률 적용 해석*과 (변경)등록·신고 필요 여부 등을 제공하는 분야별 ^{가칭}「위치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27)

* 자율주행 IoT 서비스 등 신유형 디지털 서비스 관련 위치정보 해석 동의방법 등 적법한 서비스 개발 방안

②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

- **(현황)** 청년·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은 위치정보 관련 설비 및 기술 확보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과 법령 준수, 실태점검 대응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창업 및 시장 안착이 용이하지 않음
- **(추진방향)** 단순한 상담·안내를 넘어 청년·예비창업가의 창업과 산업 정착까지 쉼 주기를 지원하는 ^{가칭}「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27)
 - ▲ 창업 공간 제공, ▲ 엔젤·벤처 투자 유치 지원 등 투자 연계, ▲ 서비스 개발 및 보호조치 등 교육·실습, ▲ 법률·경영·기술 자문, 사업 고도화 컨설팅 등 위치정보 특화 종합 지원센터 역할 수행

③ 산업 실태조사 실시

- **(현황)** 국내 위치정보사업자 현황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방미통위에 등록·신고된 사업자에 한정하여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24~)
- **(추진방향)** 현 사업자 실태조사를 산업 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개편 추진('28~)

① 위치정보·AI 융복합 서비스 발굴·지원

- **(현황)** 위치정보 관련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위치정보 산업계의 미래 유니콘 기업의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한 공모전 개최
- **(추진방향)**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상품을 발굴하고, 위치정보-AI 융복합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26~)

※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시 AI 융합 서비스에 대한 가점 부여, AI 전문가로 구성된 AX 자문단을 통한 개발 역량 강화 자문 등을 통해 위치정보-AI 융복합 서비스 발굴

< 위치정보 스타트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

성장 초기	성장기		도약기			
창업 인프라	초기 자금	지식재산권	네트워킹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국내외 판로
창업 공간, 클라우드 등 서비스 개발 환경 제공	초기 개발 비용 지원	특허·상표 출원 지원	IR 데모데이, 선배창업자 교류 등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투자자 연결, 운영자금 확보 지원	국내외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②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 **(현황)** 기술력을 지닌 위치정보 분야 스타트업과 기술 수요가 있는 기관·기업 간 매칭 창구 부재로 스타트업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 존재
- **(추진방향)** 위치정보 기반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공공 및 대·중견 기업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 매칭을 지원, 스타트업의 기술검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28)

<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플랫폼 운영(안) >



전략 2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1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①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제도 일원화

- **(현황)** 긴급구조기관(소방청·해양경찰청)과 경찰관서(경찰청)로 개인위치정보 이용 기관을 구분한 현행법은 기관별 이용 요건이 달라 구조 사각지대 발생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긴급구조 신고(119·112) 시, 경찰과 달리 소방·해경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구조 신고 처리 불가

【상황①】 소방서에서 건물 관계인을 통해 구조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상 개인위치정보 제공이 불가해 부득이한 수색과 화재 현장 진입 상황이 발생하고, 불요한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 발생

【상황②】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인명 구조, 범죄 예방 및 수사, 실종 수색 및 구조 등을 소관하고 있으나, 목격자, 실종아동 보호자 등에 의한 신고 시 위치정보 이용이 불가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

- **(추진방향)** 긴급구조기관도 경찰관서와 같이 제3자가 구조 신고한 경우에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법 개정, ~'27)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위한 안전·관리 장치 보완

현 행		개 선(안)	
구 분	긴급구조 요청 주체	구 분	긴급구조 요청 주체
소방청 해양경찰청	본인, 가족(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소방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본인, 가족(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실종아동등 보호자, 제3자(목격자, 구조 요청 받은 타인)
경찰청	본인, 실종아동등 보호자, 제3자(목격자, 구조 요청 받은 타인)		

② 위치정보 품질측정 법적 근거 마련

- **(현황)** 긴급구조 관련 위치정보사업자의 기술 투자 및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매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측정('19~)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안정적인 품질측정 및 운용에 한계

<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품질관리 체계 비교(미국/EU/한국) >

구 분	미국	EU	한국
위치정보 제공의무	○	○	○
품질관리 법적근거	47 CFR 9.10-911 Service	EU EECC, EU 2023/444	X
수평위치정확도기준	50m 이내 오차 80% 달성	회원국별 자체 기준 설정 의무 부과 ※ 유럽긴급전화번호협회(EENA) 권고안: 50m 이내 오차 80% 달성	X

※ 미국·EU는 제도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정확도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한국은 위치정보 품질측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품질 향상을 유도

- **(추진방향)** 위치정보 품질측정 실시 관련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연구('27)

① 수직 위치정보 도입

- **(현황)** 국내 긴급구조 위치정보 체계는 위·경도의 수평 위치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고층화·밀집화된 도시 환경에서의 활용에 한계
 - ※ 미국은 사업자의 수직 위치정보 제공 의무와 품질기준을 마련('21)하여 긴급구조 체계에 수직 위치정보를 도입 / EU는 회원국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수직 측위 기준을 설정하여 EU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22)하며 긴급구조 체계 개선 중
- **(추진방향)** 관계기관(방미통위, 위치정보사업자,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수직 측위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국내 긴급구조 위치정보 체계에 수직 위치정보를 도입(~'28)

②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세대 측위 기술개발

- **(현황)** 화재 현장 등 측위 인프라가 훼손되거나, 측위 인프라가 없는 음영 지역에서는 기술적으로 구조 대상의 위치 확인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 **(추진방향)** GPS, Wi-Fi 측위가 제한되는 구조 현장(지하, 화재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긴급구조용 측위 기술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추진('28~)

< (예시) GNSS(위성항법시스템) 방식 기반 실내 긴급구조 위치추적 기술개발(안) >



-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시험 인증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28~)

①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 개발 · 확산 지원

- **(현황)** 산업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나, 위치정보 수집 거부감,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홍보 부족 등으로 산업 현장 내 안전 관련 위치기반서비스의 도입·확산 지연

현장의 목소리

- ▲ GPS, IoT 등을 이용한 위치기반 안전 장비의 도입이 늘고 있고, 이러한 장비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의 잠재 수요가 풍부하나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장비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진방향)** 상용화된 위치기반 안전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인 ^{가칭} '국민안전 LBS 솔루션 대상'을 개최하여 우수 서비스 발굴·확산(26~)
- ※ 경진대회 우수작에 대하여 바우처 연계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② LBSP 운영 및 인프라 정비

- **(현황)** 실내 구조가 필요한 화재·납치 등 긴급상황에서 구조대상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구축·운영(13~)

* LBSP는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게 구조대상이 가입하지 않은 이동사의 Wi-Fi 정보를 확인·제공하여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정확도 개선 지원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Location Based Service Platform) 운영 구조 >



- **(추진방향)** 시스템 장애 예방 및 플랫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플랫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교체·구축(~27)

1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권리 강화

① 불법 위치추적 범죄 조장·방조 판매 행위 금지

- **(현황)** 누구든지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나,
 - 위치추적기 판매 시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 타인의 물건에 몰래 부착하여 스토킹·불법 미행 등에 활용하도록 조장·방조하는 사례 증가

불법 위치추적 조장 사례

- ▶ "남편 외도 잡은 소형 위치추적기", "별도 엄폐 작업 필요 없음" 등 몰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강조하고, 불법 위치추적 성공 경험을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판매

- **(추진방향)** 위치추적기 판매·거래 과정에서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판매·알선 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 개정, ~'27)

② 위치추적기 설계 단계부터 불법 위치추적 예방 기능 도입 추진

- **(현황)** 저가의 소형 위치추적기 제품들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제품·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스토킹 등 범죄 악용 방지 기능 등을 내재화하도록 하는 관련 기술 기준 또는 제도 부재
- **(추진방향)** 미확인 위치추적기 탐지·경고·차단 기능 등 불법 위치추적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품·서비스에 반영되도록 관련 사업자(제조사-위치정보사업자-플랫폼사) 간 기술협력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27)

③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 공개 의무화

- **(현황)**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할 의무가 있으나, 지침에 대한 공개 의무는 없음
 - 위치정보의 불법 수집 및 유출·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강화 및 알 권리 제고 필요

- **(추진방향)** 사업자가 마련한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 중 이용자 보호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하는 의무 신설(법 개정, ~'27)
 - ※ (공개 대상 예시)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대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등
 - ※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을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공개된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공개한 것으로 간주

④ 위치정보 수집 중단권 도입

- **(현황)**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정보 통제권에 해당하는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 동의 철회, 일시 중지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통제권 관련 규정이 부재
 - AI·IoT 기술 발전으로 사물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물건 소유자의 위치정보 통제권 마련 필요
- **(추진방향)** 물건 소유자가 본인 소유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중지(Opt-out)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법 개정, ~'27)

2 사업자 관리·점검 체계 정비 및 혁신

① 미등록·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 강화

- **(현황)**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미통위에 등록·신고가 필요*하나,
 - 사업자의 법·제도 인식 부족이나 규제기관 감독 회피 목적 등으로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 지속 발생
- * 등록 없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없이 사물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현장의 목소리

- ▲ 법령 준수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와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국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불법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 **(추진방향)** 위치정보사업 미등록·미신고, 동의 없는 위치추적 조장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 추진
 - 불법 위치추적 등 고위험 분야,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치정보 보호 모니터링·점검 강화('26~)
- ※ 불법 위치추적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 무관용 대응 원칙 확립

② 점검·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보완

- **(현황)** 현행법은 점검·감독 방해 행위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준법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위반 행위 억지력이 미흡
 - * 규제 회피 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제재수단이 자료제출·검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처분(1천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렵고, 성실히 점검에 협조하거나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
- **(추진방향)** 자료제출 거부 및 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상향(1천만원→3천만원), 등록취소·사업폐지 대상*에 자료제출 거부 및 검사 방해·기피, 시정명령 거부 추가(법 개정, ~'27)
 - * 현재는 ①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미개시, ③설비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
-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정률/정액) 상한을 확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 4억원 이하 → 6% / 20억원 이하, 법 개정, ~'27)

③ 사실상 폐업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 **(현황)**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업 신청도 하지 않는 유령사업자로 인해 이용자 피해·권리구제 공백, 행정 비효율성 우려
- **(추진방향)** 사실상 폐업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이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제도 도입(법 개정, ~'27)

④ 법 위반 점검 대상 · 방식 정비

- **(현황)** 정기 실태점검 제도 도입('22년 법 개정) 이래로 매년 1천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대상으로 실태점검 실시
 - 사실상 전수 점검으로 진행하는 현 실태점검 방식은 고위험 사업자의 집중 관리를 어렵게 하고, 점검의 비효율 및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
- ※ 측위기술 및 산업 발전으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수는 '23년 2,754개, '24년 2,924개, '25년 3,185개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장의 목소리

- ▲ 실태점검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의도적 법령 위반은 없었으나 결국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영세한 사업자 입장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있었으면 합니다.

- **(추진방향)** 중소·영세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태점검 방향, 집중점검 분야 등을 포함하는 연간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사전 공개('27~)
 -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실태점검과 대규모로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실태점검으로 구분하여 연간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운영
- 정기 실태점검의 한계 보완 및 사전 예방 강화 등을 위해 위치정보 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는 자율규제 체계 마련 검토('27~)
 - ※ 자율규제단체 지정, 민간 주도 인증 제도 도입,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태료·과징금 감경, 점검 주기 완화 등) 등 자율규제 지원 방안 연구

⑤ AI 기반 점검 시스템 구축

- **(현황)** 정기 실태점검이 의무화되고 위치정보 수집·이용 사업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점검·감독 업무에 장시간 소요
- **(추진방향)** 기존에 공무원이 수행하던 점검 자료 분석,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 분석 등을 AI 시스템이 지원·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칭} 'AI 기반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27~)

①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 보호·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 다양한 제품·서비스들에 위치정보가 활용되고 있으나, 신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피해 등에 대한 이용자의 경험 및 이해와 관련된 교육자료와 기업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
- **(추진방향)**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위치정보 보호 방법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27)

< 가칭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 보호·윤리 가이드라인 내용(안) >

- 위치정보 보호 수칙, 위치정보 법령 위반 및 처벌 사례
- 아동·청소년, 성인 등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 스마트폰 등 주요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의 위치정보 수집·이용 권한 통제 방법
- 불법적인 위치추적 방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 설계(Privacy by Design) 등

②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개선

- **(현황)**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원격회의 방식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접근성 등 개선 필요

현장의 목소리

- ▲ 법령을 잘 준수하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위치정보 법령이 너무 어렵습니다.
- ▲ 위치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접근이 어렵고, 교육을 받더라도 실제 방미통위의 점검 기준과 관련성이 떨어져 실효성 있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추진방향)** 교육 인프라·교육 방식 고도화, 주요 위반 사례* 및 최신 기술·제도 동향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형 콘텐츠 제공으로 사업자 교육 실효성 제고(27)

* 양수·합병 인가신고, 휴·폐업 승인 신청·신고, 이용약관 공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

③ 이용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홍보

- **(현황)**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의 위법성, 위치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은 저조
- **(추진방향)**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마련 및 배포(27)

VI. 추진 일정(안)

전략	추진과제	일정		
		'26	'27	'28
①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1.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			
	① 오프라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 ^[고시]			
	② 위치정보 보호조치 규제 정비 ^[고시]			
	③ 개인위치정보 동의 예외 범위 확대 ^[법]			
	④ 위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개선 ^[법]			
	⑤ 위치정보사업 신고 규제 합리화 ^{[법] [시행령]}			
	2. 위치정보 정책 추진체계 구축			
	① 위치정보 정책 거버넌스 정립 ^[시행령]			
	② 투자·창업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법] [시행령]}			
	3. 위치정보 분야 창업·육성 촉진			
	① 분야별 위치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②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 ^[예산]			
	③ 산업 실태조사 실시 ^[예산]			
	4. 위치정보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① 위치정보·AI 융복합 서비스 발굴·지원 ^[예산]			
	②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예산]			
② 위치정보 활용	1.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① 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제도 일원화 ^[법]			
	② 위치정보 품질측정 법적 근거 마련 ^[법]			

전략	추진과제	일정		
		'26	'27	'28
안전망 강화	2. 긴급구조 위치정보 기술 고도화			
	① 수직 위치정보 도입			
	②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세대 측위 기술개발 R&D			
	3.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인프라 활성화			
	① 위치기반 안전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 예산			
	② LBSP 운영 및 인프라 정비 예산			
③ 신뢰받는 이용보호 기반 조성	1.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권리 강화			
	① 불법 위치추적 범죄 조장·방조 판매 행위 금지 법			
	② 위치추적기 설계 단계부터 불법 위치추적 예방 기능 도입 추진			
	③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 공개 의무화 법			
	④ 위치정보 수집 중단권 도입 법			
	2. 사업자 관리·점검 체계 정비 및 혁신			
	① 미등록·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 강화			
	② 점검·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보완 법			
	③ 사실상 폐업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법			
	④ 법 위반 점검 대상·방식 정비			
	⑤ AI 기반 점검 시스템 구축 예산			
	3.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인식 제고			
	①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 보호·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②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개선 예산			
	③ 이용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홍보 예산			